# 12 · 29여객기참사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 (전진숙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8672

발의연월일: 2025. 3. 5.

발 의 자:전진숙·허종식·윤후덕

김정호・정준호・박 정

박희승 • 전용기 • 이인영

강훈식 · 정을호 · 이수진

이정문 • 문금주 • 박선원

의원(15인)

#### 제안이유

지난 2024년 12월 29일 전라남도 무안군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여객기 사고(이하 '12·29여객기참사')로 인하여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함에 따라 사고원인을 신속하게 규명하고, 희생자를 추모하며, 신체적·정신적·경제적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보상 및 지원을 통해 생활 안정 및 공동체 회복을 도모할 필요성이 제기됨.

이에 특별법 제정을 통해 12·29여객기참사의 피해지원을 위한 심의위원회,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 구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, 피해자에 대한 생활지원금 등 지급, 심리상담·의료적 지원, 피해지역 공동체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시행·복합시설의 설치 및 추모사업 등에 대하여 규정하려는 것임.

# 주요내용

- 가. 이 법은 12·29여객기참사의 희생자를 추모하며 피해자의 권리보 장 대책을 수립함으로써 피해자의 일상과 공동체 회복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(안 제1조).
- 나. 피해자의 권리로 진상조사 및 피해자 구제 등 모든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참여, 차별과 혐오로부터 보호, 생활·의료·심리·돌봄·법률 등 각 분야에서 필요한 지원 등의 권리를 규정함 (안 제2조).
- 다.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간병비를 포함한 의료지원금의 지급, 심리지원, 근로자 치유휴직 등 생활비를 포함한 교육·건강·복지·돌봄·고용 등 피해자의 일상생활 전반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도록 함(안 제14조부터 제24조까지).
- 라. 국가등이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을 개발·시행하고, 공동체 복합시설 및 마음회복지원센터를 설치하며, 12·29여객기참사 희생자들의 추모와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추모공원 조성, 추모기념 관 건립, 추모제 개최 등 추모사업과 재단 설립을 지원하도록 함(안제3장).
- 마. 국회 및 유가족단체 등이 관계기관 등으로부터 진상조사 및 피해 지원 상황을 보고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및 사고조사의 투 명성과 객관성 제고를 위하여 「항공・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 률」에 따른 항공・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위원 및 항공・철도사고

조사단의 사고조사관의 추가 위촉 및 임명을 각각 2인 이내의 범위에서 요청할 수 있도록 함(안 제4장).

# 12 · 29여객기참사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

#### 제1장 총칙

- 제1조(목적) 이 법은 12·29여객기참사의 희생자를 추모하고 피해자의 권리보장 대책을 수립함으로써 피해자의 일상과 공동체 회복을 도 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  - 1. "12·29여객기참사"란 2024년 12월 29일 전남 무안 국제공항에 착륙하려던 여객기가 활주로 외벽에 충돌해 다수의 희생자와 피해 자가 발생한 사건을 말한다.
  - 2. "희생자"란 12·29여객기참사 당시 사망한 사람 및 12·29여객기 참사에 따른 신체적·정신적인 피해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을 말한 다.
  - 3. "피해자"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
    - 가. 희생자의 배우자(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·직 계존비속·형제자매(이하 "유가족"이라 한다)
    - 나.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제8조에 따라 12·29여 객기참사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다고 인정받은 사람

- 1) 12·29여객기참사 당시 긴급구조 및 수습에 참여한 사람(직 무로서 구조 및 수습에 참여한 공무원은 제외한다)
- 2) 그 밖에 12·29여객기참사로 인하여 신체적·정신적·경제적 피해를 입어 회복이 필요한 사람
- 4. "피해지역"이란 12·29여객기참사로 인하여 희생자와 피해자가 다수 발생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를 말한다.
- 5. "유가족단체"란 유가족으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.
- 제3조(피해자의 권리) 피해자는 12·29여객기참사에 대한 진상조사, 피해자 구제 등 모든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.
  - 1.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고 진상조사 과정 등 정부 행정에 참여할 권리
  - 2. 차별받지 아니하고 혐오로부터 보호받으며 필요한 조력을 받을 권리
  - 3.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
  - 4. 기억, 추모, 애도를 받거나 할 권리
  - 5. 생활지원·의료지원·심리치료지원·돌봄지원·법률지원 등 필요 한 지원을 받을 권리
  - 6. 추모사업·공동체 회복사업 등 후속 사업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 하는 등 참여할 권리
  - 7. 배상 및 보상을 받을 권리
  - 8. 그 밖에 「대한민국헌법」과 국제인권조약에 따라 인정되는 피해

자의 권리

- 제4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 (이하 "국가등"이라 한다)는 피해자에 대한 피해구제 및 지원 등 피해자의 권리보장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  - ② 국가등은 이 법에 따른 피해구제 및 지원 등 피해자의 권리보장을 위한 업무수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  - ③ 국가는 피해자의 권리 보장 및 피해지역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  - ④ 국가는 희생자와 피해자에 대하여 명예훼손, 모욕, 개인정보 유출 등 2차 가해행위(이하 "2차 가해행위"라 한다)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- 제5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) 이 법은 12·29여객기참사와 관련된 진상 조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.

# 제2장 피해 구제 및 지원 등 제1절 12·29여객기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

제6조(12·29여객기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) ① 12·29여객기참사의 피해자 구제 및 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12·29여객기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(이하 "심의위원회"라한다)를 둔다.

-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- 1. 피해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의 심의 · 의결에 관한 사항
- 2. 피해자와 피해지역에 대한 피해구제 및 지원대책 등의 추진 및 점검에 관한 사항
- 3. 피해구제지원을 위한 피해조사,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금 및 그 지원 대상·범위 결정 등에 관한 사항
- 4.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의 제정 · 개정에 관한 사항
- 5. 그 밖에 이 법의 목적 실현을 위하여 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
- 제7조(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)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. 이 경우 제5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위원 정수의 3분의 1을 넘지 못한다.
  - 1. 재난, 의문사 등 진상규명과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 망을 갖춘 사람
  - 2.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인권 분야 비영리 민간단체·법인·국제기 구에서 근무하는 등 인권 관련 활동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 는 사람
  - 3. 생활지원, 의료지원,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등 관련 분야의 학식 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  - 4.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

-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
- 5. 기획재정부, 법무부, 행정안전부, 보건복지부 소속 고위공무원단 에 속하는 공무원
-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- ③ 심의위원회에는 심의·의결에 필요한 사실관계 확인, 관련 자료의 수집과 검토 등을 위한 지원조직을 둘 수 있다.
-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, 위원 선임 절차, 지원조직의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8조(피해자 인정 신청 등) ① 12·29여객기참사로 인한 피해를 인정 받으려는 자(이하 "신청인"이라 한다)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지원금의 지급을 함께 신청할 수 있다.
  - ② 제1항에 따른 피해자 인정 신청 및 지원금의 지급신청은 이 법시행 후 2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. 다만, 신청인이 일정기간 이상 국외에 거주하는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내에 신청할 수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.
  - ③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피해자 인정 여부 및 지원금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. 다만, 심의위원회는 사실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한 차례만 30일의 범위

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- ④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피해자에 해당되는지 등을 심의·의결하는 데 필요한 사실 등을 조사할 수 있다. 이 경우 신청 인은 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에서 지원금액 등에 관한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다.
- ⑤ 심의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사실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사하는 사실과 관련이 있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개인, 기업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자료 등의 제출 요구 또는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개인, 기업 및 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이에 따라야 한다.
-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피해자 인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9조(재심의) ① 제8조제3항에 따라 심의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.
  - ②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재심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. 다만, 심의위원회는 사실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  -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심의 신청절차 등 재심

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#### 제2절 피해자 및 피해지역 지원 등

- 제10조(지원의 원칙) ① 국가등은 이 법에 따른 피해구제 및 행정적· 재정적 지원 등을 신속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 으로 시행하여야 한다.
  - ② 국가등은 피해자에게 필요한 생활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생활비를 포함한 교육·건강·복지·돌봄·고용 등 피해자의 일상생활 전반을 종합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.
  - ③ 국가등은 외국인, 장애인, 아동 등 피해자에게 필요한 기술적・행정적・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.
- 제11조(12·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단 등) ① 이 법에 따른 피해자 및 피해지역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제30조에 따른 지원·추모위원회의 사무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12·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단(이하 "지원단"이라 한다)을 둔다. 이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피해자 및 피해지역 지원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체계를 구축·운용할 수 있다.
  -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단의 구성·운영 및 정보체계의 구축·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12조(피해자 등의 참여 보장) 국가등은 피해자 및 피해지역에 대한

지원 계획을 수립・시행할 때에 피해자 등의 의견을 듣고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.

- 제13조(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 지원) ① 국가는 피해지역의 문화 ·관광 등 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하여 피해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어 특별지원방안을 시행하여야 한다.
- 제14조(생활지원금 등) ① 국가는 피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금(이하 "생활지원금등"이라 한다)을 지급할 수 있다.
  - 1. 생활지원금: 피해자의 생활 보조에 필요한 비용
  - 2. 의료지원금: 피해자의 12·29여객기참사로 인한 신체적·정신적 질병 및 부상과 그 후유증의 치료, 간병 또는 보조장구의 사용에 소요되는 비용
  - ② 생활지원금등의 지급범위와 금액의 산정 및 지급방법, 지급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  - ③ 생활지원금등에 대하여는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3조제2항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
- 제15조(15세 미만 희생자에 대한 지원) ① 국가는 「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」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을수혜자로 하는 단체보험에 가입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「상법」제732조에 따라 가입이 제외된 15세 미만 희생자에 대한 특별지원금의 지급 등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  - ② 제1항에 따른 특별지원금은 15세 미만 희생자가 제1항에 따른

단체보험에의 가입이 제외되지 않았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보험지급금 수준을 고려하여 정하되, 지급의 기준·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- 제16조(심리상담 등의 지원) ① 국가등은 피해자, 구조·복구·치료· 수습·자원봉사 및 취재 등에 참여한 사람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심리상담 및 일상생활 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.
  -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·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17조(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의 검사·치료) ① 국가는 피해자 가 12·29여객기참사로 인하여 악화된 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에 대하여 의학적 검사 또는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하여야 한다.
  -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·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18조(일상생활돌봄 지원) 국가는 피해자의 회복과 일상생활 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돌봄서비스를 지원하여야 한다.
  - 1. 일상생활 유지를 위한 가사활동 지원 서비스
  - 2. 건강과 영양상태 개선을 위한 식사 지원 서비스
- 3. 그 밖에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 제19조(근로자의 치유휴직) ① 사업주는 이 법에 따른 피해자에 해당

하는 근로자가 이 법 시행 후 3년 이내에 12·29여객기참사로 인한 신체적·정신적 피해를 치유하기 위하여 휴직(이하 "치유휴직"이라 한다)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.

- ② 치유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.
- ③ 사업주는 치유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, 치유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. 다만,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④ 치유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20조(근로자의 치유휴직 지원) ① 국가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치유 휴직을 허용한 경우 그 사업주에게 해당 근로자에 대한 고용유지비 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여야 한다.
  - ② 제1항에 따른 고용유지비용의 지급내용, 신청 및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21조(교육비 지원과 특별전형 등) ① 국가등은 12·29여객기참사의 피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학금·수 업료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.
  - 1.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 각 호의 학교에 입학이 확정되었거나 재학 중인 학생
  - 2.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 각 호의 학교에 입학이 확정되었거나 재학 중인 학생

- ②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12·29여객기참사 당시 피해자가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 또는 초·중·고등학생이었던 경우에는 해당 피해자에 대하여 특별전형을 실시할 수 있다. 이 경우 같은 법 제32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입학정원의 100분의 1 이내에서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.
- 제22조(「긴급복지지원법」 및 「아이돌봄 지원법」·「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」 등에 대한 특례) 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피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「긴급복지지원법」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로 본다.
  - ② 피해자의 피해회복과 관련된 활동으로 피해자 자녀에 대한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「아이돌봄 지원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아이 돌봄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.
  - ③ 12·29여객기참사로 인하여 친권자가 모두 사망한 중증장애인에 대하여는 「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활동지원급여의 월 한도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.
  - ④ 국가등은 12·29여객기참사로 인하여 친권자가 사망하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미성년인 피해자에 대하여는 성년에 이를 때까지의 보호 및 지원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  -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지원의 기준·기간·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- 제23조(피해자에 대한 법률지원) ① 국가는 피해자에 대하여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.
  -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부담할 수 있다.
  -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요건과 내용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24조(피해자의 금융거래 관련 협조 요청) 국가등은 금융채무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의 금융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관련 공공기관, 금융기관, 그 밖의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- 제25조(자문단의 운영) ① 피해자 및 유가족단체의 권리를 보호하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문기구(이하 "자문단"이라고 한다)를 둘 수 있다.
  - ② 자문단은 10인 이내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하며, 자문위원은 진상 조사와 피해구제 및 지원 등에 관한 전문가로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추천된 사람을 제30조에 따른 지원·추모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 다.
  - 1. 국회가 추천하는 5인 이내의 전문가
  - 2. 제2조제5호에 따른 유가족단체가 추천하는 5인 이내의 전문가
  - ③ 이 법에 규정한 사항 외의 자문단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제30조에 따른 지원·추모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.

#### 제3장 공동체 회복 지원 등

- 제26조(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의 개발·시행) ① 국가등은 피해자 및 피해지역 주민의 심리적 안정과 공동체 회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고려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.
  - 1. 국적·인종·종교·성별·나이·직업 등 피해자 및 피해지역 주 민의 특성
  - 2. 피해자 및 피해지역 주민의 지역사회 이탈 방지, 삶의 질 향상
  - 3. 피해지역의 특색 있는 문화 진흥, 지역사회의 유대 강화
  - 4. 건강·복지·문화·체육 등 피해지역에 소재하는 비영리 민간단체, 공익단체 및 동호회 등의 참여와 연계
  - ② 국가등은 피해자가 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 이 경우 그 지원의 내용·방법 및 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  - ③ 국가등은 제1항의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피해자 및 피해지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.
  - ④ 국가등은 제1항의 프로그램 개발·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·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다.
- 제27조(공동체 복합시설의 설치) ①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공동체의 회 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심리상담과 건강·복지·돌봄·노동·문 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합시설을 국가 및 유가족단체와 협의

하여 설치 · 운영할 수 있다.

- ② 제1항에 따른 복합시설의 장은 효과적인 공동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직원에게 피해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제1항에 따른 심리상담과 건강·복지·돌봄·노동·문화 등의서비스를 제공하게 하여야 한다.
- ③ 국가는 관계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른 복합시설을 설치・운영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- ④ 제1항에 따른 복합시설의 설치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- 제28조(마음회복지원센터 설치 등) ① 국가는 피해자와 피해지역 공동 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피해자의 종합적인 정신건강관리를 위한 마음회복지원센터를 설치하여야 한다.
  -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마음회복지원센터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  - ③ 제1항에 따른 마음회복지원센터는 국가등이 운영하여야 하며, 마음회복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 및 운영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.
- 제29조(추모사업 및 장기추적 연구 등 시행) ① 국가등은 12·29여객기참사 희생자들의 추모와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. 다만,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.

- 1. 추모공원 조성
- 2. 추모기념관의 건립
- 3. 추모기념관 자료의 수집 · 보존 · 관리 · 전시 및 조사 · 연구
- 4. 추모기념관 자료 및 기념사업에 관한 홍보·교육과 이에 관한 각 종 간행물의 제작·배포
- 5. 추모비의 건립 및 추모행사 개최
- 6.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 훈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
- 7. 그 밖의 관련 사업
- ② 국가등은 12·29여객기참사 피해자의 사회적 고립 방지와 후유 증 관리, 재난 대응체계 강화 및 효과적인 지원 정책 개발을 위해 신체적·정신적 건강 상태 등에 대한 장기 추적 연구를 시행하여야 한다.
- ③ 제1항에 따른 추모기념관은 기록물의 체계적 관리,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시설·장 비와 이를 운영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갖추어야 한다.
- 제30조(12·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) ① 이 법에 따른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12·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(이하 "지원·추모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  - ② 지원·추모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  - 1. 생활지원금ㆍ심리상담ㆍ교육비 등 지원, 공동체 회복 지원, 교육

환경 개선 등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

- 2. 추모공원, 추모기념관, 추모비 등 추모사업에 관한 사항
- 3. 제33조에 따른 재단 선정에 관한 사항
- 4. 그 밖에 추모사업 등과 관련하여 지원·추모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③ 지원·추모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- ④ 지원·추모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, 위원은 관계 공무원, 유가족단체가 추천하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유가족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무총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. 이 경우 공무원인 위원은 위원 정수의 3분의 1을 넘지 못한다.
- ⑤ 지원·추모위원회는 그 업무 중 일부를 분담하여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.
- ⑥ 지원·추모위원회에는 제2항에 따른 심의·의결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수집과 검토, 추모사업 추진 등을 위한 지원조직을 둘 수 있 다.
- ⑦ 지원·추모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, 위원 선임 절차, 지원조직의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31조(추모공원 등의 명칭 및 위치) ① 지원·추모위원회는 추모공 원, 추모기념관, 추모비(이하 "추모시설"이라 한다) 등의 명칭에 대

하여 공모 등의 방법으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심의·결정하여 야 한다.

- ② 추모시설의 위치는 피해지역 내 참사 현장 인근으로 지원·추모 위원회가 정한다.
- 제32조(추모시설 설치 특례) ① 국가등은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,「학교보건법」,「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등 관계 법률에도 불구하고 추모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.
  - ② 제1항에 따른 추모시설의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33조(재단 출연 등)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 12·29여객기참사 희생자를 추모하고 대형 재난사고 재발방지 등에 이바지하고자 설립되는 재단(「민법」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제30조제2항제3호에 따라 지원·추모위원회가 선정한 재단을 말한다)에 대하여 설립 후 10년 동안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.
  - 1. 추모시설의 운영 · 관리 및 추모제의 시행
  - 2.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문화 확산에 관한 사업
  - 3. 피해자의 심리·생활안정 및 사회복귀 등 지원 사업
  - 4.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
  - ② 국가등은 추모시설의 운영·관리 등 추모사업을 제1항의 재단에

위탁할 수 있다.

- 제34조(기탁금품의 접수에 관한 특례) ① 제33조에 따른 재단은 「기부금품의 모집·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 제5조제2 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다.
  - ② 제1항에 따른 기탁금품의 접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#### 제4장 상황보고 등

- 제35조(진상조사 및 피해지원 상황보고 등) ① 국회, 지원·추모위원 회 및 유가족단체는 관계중앙행정기관, 관계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·조직(이하 "관계기관등"이라 한다)에 12·29여객기참사에 대한 진상조사 및 피해지원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요구를 받은 관계기관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.
  - ② 국회, 지원·추모위원회 및 유가족단체는 진상조사 및 피해지원 상황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.
- 제36조(사고조사위원회 및 사고조사단 구성에 대한 특례) ① 국회는 1 2·29여객기참사에 대한 사고조사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기

위하여 「항공·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」 제6조 및 같은 법 제20조에도 불구하고,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항공·철도사고조사위원회(이하 "사고조사위원회"라고 한다)의 위원과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항공·철도사고조사단(이하 "사고조사단"이라 한다)의 사고조사관을 각각 2인 이내에서 추가적으로 위촉·임명할 것을 요청할 수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과 사고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촉·임명을 요청받은 사람이 관계법령에 따른 결격사유가없는 경우 즉시 위촉·임명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위촉·임명된 사고조사위원회 위원과 사고조사관의 업무의 범위는 12·29여객기참사의 사고조사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.

# 제5장 보칙

제37조(비밀준수 의무) 심의위원회 또는 지원·추모위원회(이하 "심의위원회등"이라 한다)의 위원·직원 또는 위원·직원이었던 자, 자문기구의 구성원 또는 구성원이었던 자, 심의위원회등의 위임·위탁등에 따라 조사에 참여하거나 업무를 수행한 전문가 또는 민간단체와 그 관계자는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·문서·자료 또는 물건을 다른 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업무수행 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
- 제38조(2차 가해행위의 금지) 누구든지 12·29여객기참사의 희생자와 피해자에 대하여 2차 가해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제39조(자격사칭 금지 등) ① 누구든지 심의위원회등의 위원·직원 또는 자문기구의 구성원 자격을 사칭하거나 심의위원회등의 업무를 위임·위탁 또는 공동수행한다고 사칭하여 심의위원회등의 권한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.
  - ② 누구든지 피해자를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한 단체를 조직하거나 단체적인 행동 또는 개인적인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제40조(권리의 보호) 이 법에 따라 발생한 권리는 양도·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.
- 제41조(부당이득의 환수) ① 국가는 이 법에 따른 생활지원금등 금전적 지급, 그 밖의 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.
  - 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
  - 2. 착오 등으로 지급된 경우
  - ② 제1항에 따라 환수하는 경우 그 반환할 자가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.
- 제42조(12·29여객기참사 관련 기록물에 대한 조치) ① 국가등은 「공 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(이하

- 이 조에서 "공공기관"이라 한다)이  $12 \cdot 29$ 여객기참사와 관련하여 수집하고 보존하는 기록물(이하 " $12 \cdot 29$ 여객기참사 관련 기록물"이라한다)을 공개하여야 하며,  $12 \cdot 29$ 여객기참사 관련 기록물의 사본을 추모기념관에 제공하여 추모사업 등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.
- ② 피해자는 12·29여객기참사의 진상규명과 자신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12·29여객기참사 관련 기록물에 대한 열람을 공공기관에 요구할 수 있다.
- ③ 공공기관은 제2항에 따른 열람을 요구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피해자가 해당 12·29여객기참사 관련 기록물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공공기관은 피해자에게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등 열람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- ④ 피해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열람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다.
- 제43조(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) 공무원이 아닌 심의위원회등의 위원은 「형법」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.

# 제6장 벌칙

제44조(벌칙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

- 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- 1. 제35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제35조제1항에 따른 보고 및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 및 자료 제 출을 한 사람
- 2. 제38조를 위반하여 신문·잡지·방송·출판물 및 「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전시물 또는 공연물의 전시·게시 또는 상영, 그 밖에 토론회·간담회·기자회견·집회·가두연설 등에서의 발언으로 공연히 희생자 또는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한 사람
-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- 1. 제37조를 위반하여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·문서·자료 또는 물건을 다른 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심의위원회등의 업무수행 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한 사람
- 2. 제39조제1항을 위반하여 심의위원회등의 위원 또는 직원의 자격을 사칭하거나 업무를 위임·위탁 또는 공동수행한다고 사칭하여 심의위원회등의 권한을 행사한 사람
- 3. 제39조제2항을 위반하여 단체를 조직하거나 단체적인 행동 또는 개인적인 활동을 한 사람
- ③ 제1항제2호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

를 제기할 수 없다.

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이 법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) 지원·추모위원회등의 위원 및 직원의 위촉·임명, 자문단의 위원 위촉, 이 법의 시행에 관한 지원·추모위원회의 규칙의 제정·공포, 유가족단체의 설립준비는 이 법시행 전에 할 수 있다.